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25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5년 10월 1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10월 13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올림픽체육과장)

가. 제안이유

- 2025 정부합동평가 자치법규 개선과제(소비자 권리제한 개선사항)
-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납부자가 이용신청을 취소하거나 군의 귀책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 처리기준을 상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용료의 반환(안 제15조)
 - 이용신청 취소유형 및 환불 처리기준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10호 제4항에서 정한 환불 · 위약금 기준 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유진)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5. 9. 25.
- 회부일자 : 2025. 10. 13.
- 상정일자 : 2024. 10. 13.

2. 제안이유

- 2025 정부합동평가 자치법규 개선과제(소비자 권익제한 개선사항)
-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납부자가 이용신청을 취소하거나 군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 처리기준을 상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권리 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용료의 반환(안 제15조)
 - 이용신청 취소유형 및 환불 처리기준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10호 제4항에서 정한 환불 · 위약금 기준 반영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56조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강원특별자치도의 정부합동평가 자치법규 개선권고(소비자 권리제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연동시킴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15조(이용료의 반환)제1항에서 이용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군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정부합동평가 자치법규 개선권고(소비자 권리제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 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고 상위 법령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불임 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불임 2 참고사항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



평 창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25년 실적)정부합동평가(자치법규 정비분야) 부서 추진현황 제출 요청

1.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 4296(2025. 3. 10.)호 관련입니다.
2. 2026년('25년 실적)자치법규 정비분야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관련하여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소관부서 각 담당자분들께서는 [불임1] 서식(담당자 현행화, 추진계획, 미추진 사유 등)을 작성하시어 2025. 3. 19.(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표별 조례 담당 부서

연번	지표명	담당 부서	비고
1	필수조례 제때마련을	안전교통과, 산림과, 의료지원과	[불임 1] 작성서식 (시트 1)
2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을	올림픽체육과	[불임 1] 작성서식 (시트 2)

* 필수조례 지표의 경우 노란색 셀의 기한까지 반드시 공포되어야 함에 유의

** 정비완료 및 제외가능한 지표 법령의 경우에도 담당자명 필수 기입

- 불임 1. '26년 지표 대상 법령 추진현황(서식) 1부.
2. 정부합동평가 지표매뉴얼 각 1부. 끝.

기획예산과장

수신자 올림픽체육과장, 안전교통과장, 산림과장,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의료지원과장)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4
----------	-----

제출년월일 : 2025. 9. 25.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가. 2025 정부합동평가 자치법규 개선과제(소비자 권익제한 개선사항)
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납부자가 이용신청을 취소하거나 군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 처리기준을 상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권리율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이용료의 반환(안 제15조)
- 이용신청 취소유형 및 환불 처리기준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10호 제4항에서 정한 환불·위약금 기준 반영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타 :
- 1) 입법예고(2025. 8. 7. ~ 8.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5-1184호, 올림픽체육과-7641(2025. 8. 7.)호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12165(2025. 8. 5.)호]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12165(2025. 8. 5.)호]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29354(2025. 8. 6.)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13979(2025. 9. 5.)호]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체육시설업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사용료를 포함한다)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을 할 수 있다.

1.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2. 군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이용료의 반환) ①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 이용료를 반환한다.</p> <p>1.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p> <p>2. 이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p> <p>3.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p> <p>②군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 이용료를 환급 및 배상한다.</p> <p>1.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p> <p>2. 이용일 4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퍼센트 배상</p> <p>3.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20</p>	<p>제15조(이용료의 반환)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체육시설업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사용료를 포함한다)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을 할 수 있다.</p> <p>1. 이용(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p> <p>2. 군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p> <p><삭제></p>

퍼센트 배상

4. 이용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

가 없는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30퍼센트 배상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

-----.

관계법령 발췌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93호)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10. 학원·교습·레저 서비스 관련

<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 (1-2)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은 제외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	*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3) 신체상 피해 발생	○ 배상액 배상	
4)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이미 경과한기간(일수) 계약상 이용기간(일수))]+ 위약금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이미 이용한 횟수) 계약상 이용횟수)]+위약금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함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음
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이미 경과한기간(일수))] - 위약금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이미 이용한 횟수) 계약상 이용횟수)] - 위약금	*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관광경제국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연락처	(033) 330 - 2018